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220 호 2020. 2. 27.(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37호[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이화, 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38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39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40호[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제12호)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41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42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12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255호[도시계획시설(육이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261호[호계공설시장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행정예고].....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266호[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270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물(쇠부리체육센터) 위수탁 협약 사항 공고]..... 28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37호

#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이화, 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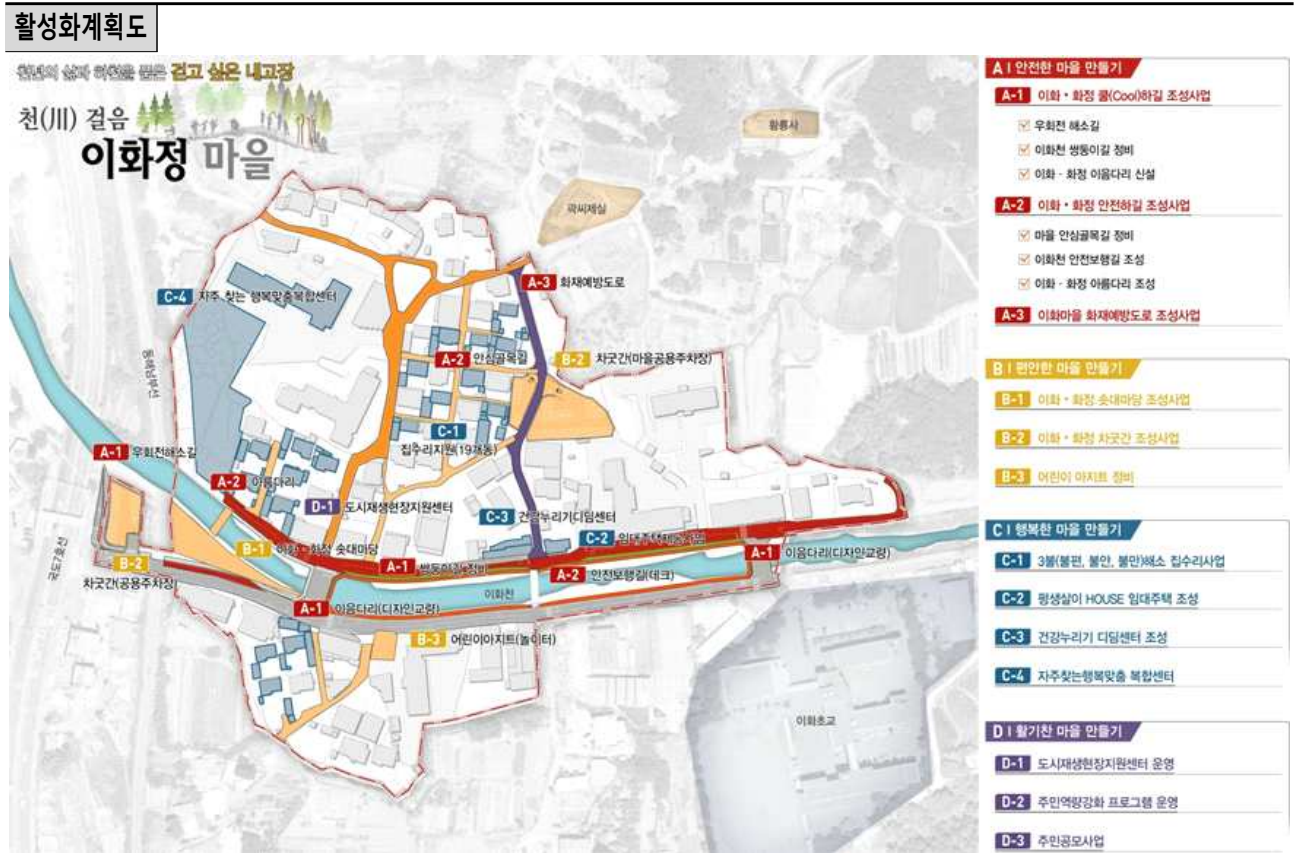
농소2동(중산동) 이화와 화정마을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개요 및 범위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천년의 삶과 하천을 품은 걷고 싶은 내 고장,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주거지지원형	23,971
	사업위치	농소2동 1166-1번지 일원		사업면적	86,190㎡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광역시 북구청, 이화·화정 도시재생뉴딜 현장지원센터</li> <li>· 농소2동(이화마을, 화정마을) 주민</li> </ul>				
사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80년대 마을의 확장이후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확충 없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화와 화정마을 일원의 활력을 되찾고, 주거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 필요</li> </ul>				
사업내용 및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 확충,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13개 단위사업(17개 세부사업)</li> <li>· 기대효과 :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배후주거지 및 지역 일자리창출 거점기능 강화</li> </ul>				
재원조달 예산집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 23,971백만원(국비 11,029, 시비 7,720, 구비 3,309, 자부담 15, 기금(HUG) 1,150, 자체 748)</li> </ul>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도시재생의 비전

천년의 삶과 하천을 품은 걷고 싶은 내고장

“천(川) 걸음 이화정 마을”

### 목표 및 추진전략



## 3.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3.1.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 사업명 : 천년의 삶과 하천을 품은 걷고 싶은 내 고장,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 사업유형 : 주거지지원형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4년간)
- 사업내용 : 기반시설 확충,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 총사업비 : 23,971백만원(국비 11,029, 시비 7,720, 구비 3,309, 자부담 15, 기금 1,150, 자체 748)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3,971	5,403	5,375	6,182	7,011
국비	11,029	2,372	2,600	2,886	3,171
시비	7,720	1,659	1,822	2,016	2,223
구비	3,309	761	801	838	909
민간(자부담)	15	5	10	-	-
기금(HUG)	1,150	-	-	442	708
자체	748	606	142	-	-

3.2. 사업계획 및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화·화정 쿨하길 조성	1) 우회전 해소길 조성	446	· 국도7호선 접속부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전 차로 개설
	2) 이화천 쌍둥이길 정비	143	· 이화천 북측 불량도로 정비
	3) 이화·화정 이음다리 신설	2,268	· 이화천 기존 교량 2개소(상류부, 하류부) 철거 후, 확장
이화·화정 안전하길 조성	4) 마을안심 골목길 조성	729	· 마을 내부 골목길 및 이화2길 정비 (CPTED 반영)
	5) 이화천 안전 보행길 조성	926	· 이화천 보행데크 설치, 고분군 산책로/웬스 갤러리 설치 등
	6) 이화·화정 아름다리 조성	168	· 이화천 하부 징검다리 구간, 보행교 설치
이화마을 화재예방도로	7) 소방도로 개설	1,026	· 단독주거 밀집지역 주변 소방도로 개설
이화·화정 숫대마당 조성	8) 이화·화정 숫대마당	806	· 지역자산 활용, 마을진입부 휴식 공간 조성,
이화·화정 차긋간 조성	9) 공용주차장 조성	2,870	·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생활SOC 조성 (기금 1,150)
어린이 아지트 정비	10) 어린이 놀이터 정비	126	· CPTED 반영, · 기존 어린이 놀이터 및 주변 환경정비
3불해소 집수리	11) 집수리 지원	146	· 노후주택 외부환경 개선 (자부담 15)
평생살이HOUSE 임대주택	12) 다가구(공가) 리모델링	748	· 이화산단 배후주거기능 강화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13) 건강생활지원센터	2,172	·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기초의료시설) 확충
자주찾는 행복맞춤 복합센터	14) 새로일하기센터/청소년문화의집	10,357	· 지역 인적자원 활용, 여성/청소년/주민 복합공간 조성
현장지원센터 운영	15) 현장지원센터 운영	542	· 주민역량강화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민역량강화	16) 주민역량강화 교육	378	· 도시재생대학, 소방/교통안전교육, 집수리, 요리, 바리스타 등
주민공모사업	17) 일반 및 기획공모	120	·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총 사업비		23,971	

3.3.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 주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활성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속으로 이화와 화정의 정주기능 강화
-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기초의료, 주민공동공간 등 생활SOC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로 지역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 일자리 창출 및 마을활력 회복 : 새로일하기센터, 협동조합 등 자생적 경제조직 구성 등을 통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거점 기능강화

### 4. 자원조달 및 집행계획

#### 4.1. 자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비 구분			총 사업비	재원별 투자계획					
			보상비	공사비	운영비		균특	광역	자체	별도 자체	민간 (자부담)	기금 (HUG)
합계		23,971	6,727	16,204	1,040	23,971	11,029	7,720	3,309	748	15	1,150
안전한 마을 만들기	1) 우회전 해소길 조성	446	320	126	-	446	234	164	48	-	-	-
	이화·화정 쿨하길조성											
	2) 이화전 쌍둥이길 정비	143	-	143	-	143	75	53	15	-	-	-
	3) 이화·화정이음다리 신설	2,268	-	2,268	-	2,268	1,190	833	245	-	-	-
	이화·화정 안전하길조성											
	4) 마을안심골목길 조성	729	-	729	-	729	383	267	79	-	-	-
	5) 이화전안전보행길 조성	926	-	926	-	926	486	340	100	-	-	-
	6) 이화·화정이름다리 조성	168	-	168	-	168	88	62	18	-	-	-
이화마을 화재예방도로												
7) 소방도로 개설	1,026	826	200	-	1,026	538	377	111	-	-	-	
(소계)		5,706	1,146	4,560	0	5,706	2,994	2,096	616	0	0	0
편안한 마을 만들기	이화·화정 숫대마당조성											
	8) 역사알림디자인센터 조성	806	220	586	-	806	423	296	87	-	-	-
	이화·화정 차곳간조성 (HUG 기금활용)											
	9) 공용주차장조성 (HUG 기금활용)	2,870	1,643	1,227	-	2,870	902	632	186	-	-	1,150
어린이아지트 정비												
10) 어린이 놀이터 정비	126	-	126	-	126	66	46	14	-	-	-	
(소계)		3,802	1,863	1,939	0	3,802	1,391	974	287	0	0	1,150
행복한 마을 만들기	3불해소 집수리											
	11) 집수리 지원사업 (자부담)	146	-	146	-	146	69	48	14	-	15	-
	평생살이HOUSE 임대주택조성											
	12) 다가구주택(공가) 리모델링	748	450	298	-	748	-	-	-	748	-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13) 건강생활지원센터	2,172	780	1,392	-	2,172	1,140	798	234	-	-	-	
자주찾는 행복맞춤 복합센터												
14) 청소년문화의집/ 새로일하기센터등	10,357	2,488	7,869	-	10,357	5,435	3,804	1,118	-	-	-	
(소계)		13,423	3,718	9,705	0	13,423	6,644	4,650	1,366	748	15	0
활기찬 마을 만들기	현장지원센터 운영											
	15) 현장지원센터 운영	542	-	-	542	542	-	-	542	-	-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16) 지역주민역량강화 교육	378	-	-	378	378	-	-	378	-	-	-
주민공모사업												
17) 일반공모 및 기획공모	120	-	-	120	120	-	-	120	-	-	-	
(소계)		1,040	0	0	1,040	1,040	0	0	1,04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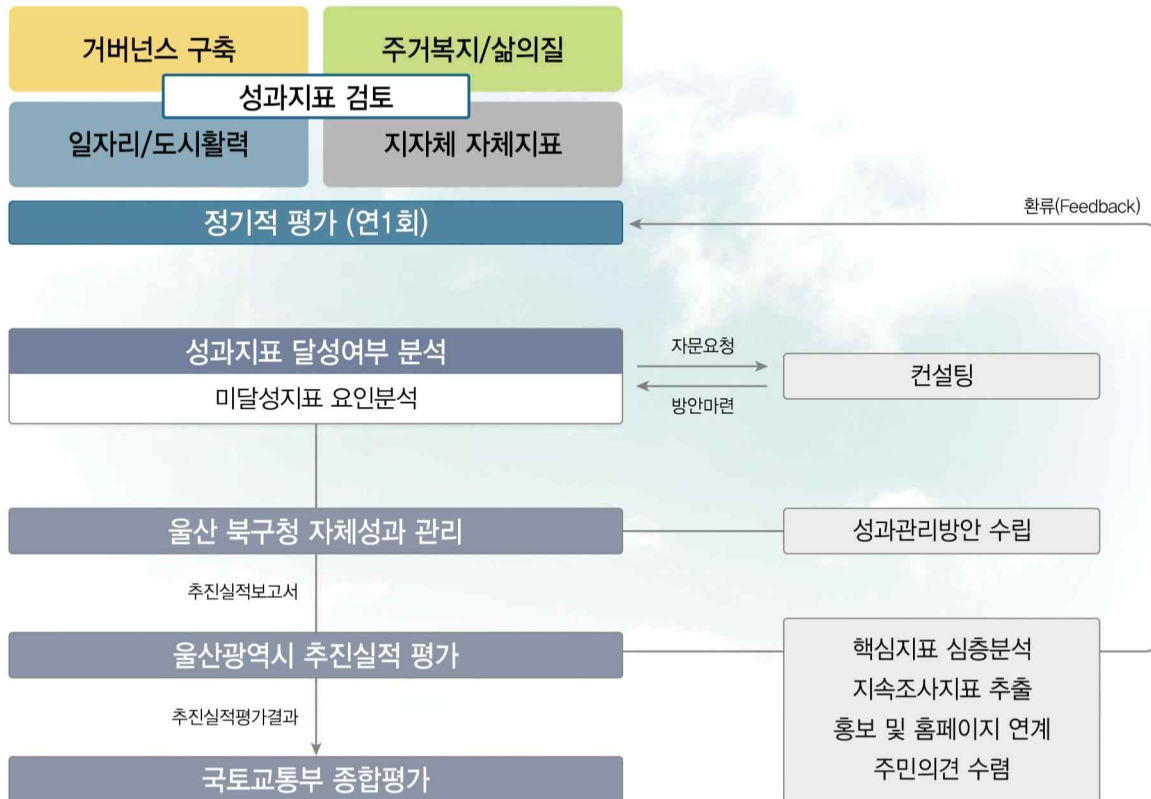
## 4.2.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3,971	5,403	5,375	6,181	7,012	
안전한 마을 만들기	1) 우회전 해소길 조성	446	386	60	-	-	
	이화·화정 클하길조성						
	2) 이화천 쌍둥이길 정비	135	75	60	-	-	
	3) 이화·화정이음다리 신설	2,268	-	48	1,020	1,200	
	이화·화정 안심하길조성						
	4) 마을안심골목길 조성	729	-	-	18	711	
	5) 이화천안전보행길 조성	926	-	-	23	903	
	6) 이화·화정아름다리 조성	168	-	-	4	164	
이화마을 화재예방도로	7) 소방도로 개설	1,026	836	190	-	-	
(소계)		5,706	1,297	366	1,056	2,978	
편안한 마을 만들기	이화·화정 솟대마당조성	8) 역사알림디자인쉼터 조성	806	513	293	-	-
	이화·화정 차긋간조성 (HUG 기금활용)	9) 공용주차장조성	2,870	-	-	1,096	1,774
	어린이야지트 정비	10) 어린이 놀이터 정비	126	-	-	3	123
	(소계)		3,802	513	293	1,099	1,897
행복한 마을 만들기	3불해소 집수리	11) 집수리 지원사업 (자부담)	146	50	96	-	-
	평생살이HOUSE 임대주택조성	12) 다가구주택(공가) 리모델링	748	606	142	-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13) 건강생활지원센터	2,172	838	1,334	-	-
	자주찾는 행복맞춤 복합센터	14) 청소년문화의집/ 새로일하기센터등	10,357	1,825	2,878	3,772	1,882
	(소계)		13,423	3,319	4,450	3,772	1,882
활기찬 마을 만들기	현장지원센터 운영	15) 현장지원센터 운영	542	136	136	135	135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16) 지역주민역량강화 교육	378	98	100	90	90
	주민공모사업	17) 일반공모 및 기획공모	120	40	30	20	30
	(소계)		1,040	274	266	245	255

### 5.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매년 1회 시행하며, 연도별 계획목표의 달성여부와 진행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계획목표와 비교하여 미달사업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단위사업별 검토 및 지원기구(LH) 등의 컨설팅을 통한 보완방안을 마련



### 6. 기타사항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시과
-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시과 도시재생담당(☎052-241-7915~79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3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연월일 : 2020. 02. 21.
2. 점용·사용의 목적 : 기존 가스배관 밸브 철거(L=3m)
3. 점용·사용의 장소 : 중산동 1209-2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일시 : 5.4m<sup>2</sup>
  - 나. 기 간  
- 일시 : 2020. 02. 24. ~ 2020. 03. 24.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도시가스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로 26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3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연월일 : 2020. 02. 24.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사방시설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호계동 산35-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영구 : 2,777m<sup>2</sup>
  - 나. 기 간  
- 영구 : 2020. 02. 24. ~ 2049.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공원녹지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40호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제12호)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제12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239-5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제12호)사업
  - 나. 명 칭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3. 사업규모 : A=2,641㎡(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 (당초) 2017. 5. ~ 2019. 12. 31.  
(변경) 2017. 5. ~ 2021.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과(☎ 052-241-7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41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송정동 1235-4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2.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138-19	울산광역시 북구	분통골길 33-22	2020-02-27	기존지명인분통골에위 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 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22-2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813	2020-02-27	이지역의지형에따라도 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8-20
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87-1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7로 21	2020-02-27	독립운동가 박상진 명칭 사용	2018-05-10
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235-4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11로 1	2020-02-27	독립운동가 박상진 명칭 사용	2018-05-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42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신명천, 대안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4. 점용 지역의 위치, 면적 및 채취량**

가. 위치 : 산하동 932-3번지, 대안동 276-17번지 일원

나. 채취량 : 7.7m<sup>3</sup>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20. 2. 26. ~ 2019. 3.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255호

## 도시계획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29-5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 나. 명 칭: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3. 사업규모 : 대지면적 감소

구 분	시설명	규 모	비 고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1동, 지하1층/지상4층 (대지면적 당초 1,500㎡ <b>변경 1,482㎡</b> /연면적 2,931.8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가. 기 간: 2018. 10. 31. ~ 2020. 3. 31.
6.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가족정책과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052-241-7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261호

## 호계공설시장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행정예고

호계공설시장 이용자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 시설물관리 등에 필요한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 업 명 : 호계공설시장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복구 경제일자리과
3. 행정예고 내용 : 호계공설시장 CCTV 설치 장소 안내

시설명 (주소)	위 치	설치장소 및 대수			비 고
		계	외부	내부	
계		9	6	3	24시간 촬영
호계공설시장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3길 17-11)	아케이드 하부	4	4	-	교체 설치(4)
	출입문 정문	1	1	-	추가 설치(1)
	문주 간판 하부	1	1	-	추가 설치(1)
	건물 통로(출입문)	3	-	3	추가 설치(3)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2. 27. ~ 3. 18.(20일간)

####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우 편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6층 경제일자리과
- 전 화 : 052) 241 - 7702
- F A X : 052) 241 - 7709

마. 의견서 제출 서식 : 【붙임】 참고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구간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대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와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의견수렴

2. 행정예고 및 목적

○ 호계역 ~ 시장2리 사거리 구간을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복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년 2월 27일 ~ 2020년 3월 19일(21일간)

5.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6. 행정예고(공고)방법 : 공보, 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일 : 2020. 3. 19.

라. 제출기관 : 북구청 건축주택과

- 주 소 :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전 화 : ☎ 052) 241-8032

- F A X : ☎ 052) 241-8019

마.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공 고 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장 소(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및 영 제28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구간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대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간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호계 구시가지 일원인 호계역에서 시장2리 사거리까지 호계 6길 33~36, 호계로 205~207번길, 호계2길 7, 호계로 209~250번길 구간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 1. 지정구간

- 호계구시가지 일원 522m(호계역에서 시장2리 사거리까지)

### 2. 지정구간 도로명 주소 및 위치도 : 【붙임 1】 , 【붙임 2】

**제4조(예산의 지원)** 지정된 시범구역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벽면이용간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벽면이용간판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2. 의료시설·약국·이미용업소는 벽면이용간판 이외에 픽토그램형 돌출간판을 1개 추가할 수 있다.
- ②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에 있어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LED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③ 신축건물은 외벽의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간판의 교체시 용이하도록 간판의 게시를 설치를 권장한다.
- ④ 커튼 월 [Curtain Wall(비내력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를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문자,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 주변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의 크기·색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픽토그램의 표시를 권장한다.
- ⑦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⑧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입체형으로 5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층에는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된 베이스 판에 입체형 문자로 표시

할 수 있다.

- ② 간판의 가로 크기는 당해 업소 전면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하고, 최대 10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범위 내에서 디자인된 베이스판은 최대 80cm 이내, 문자나 도형 등은 최대 6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위층과 아래층의 한 벽면에는 당해 업소의 광고물만 표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간판을 상·하로 연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 ⑤ 같은 층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 할 때는 다른 간판과 어울리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⑥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캐노피 포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하층을 위한 벽면 이용 간판은 2층 창문높이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돌출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소형돌출간판을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면적은 0.36㎡, 두께 0.2m 이내로 하되 픽토그램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동일 건물 내의 소형돌출간판의 규격은 동일하게 한다.

**제8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인접한 도로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와 지하 또는 건물 구조상 다른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높이는 6m이내로 한다.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5층 이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② 건물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높이는 3m 이내, 가로길이는 10m 이내로 글자크기는 높이 2m 이내로 한다.

**제10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설치하는 가로쓰기로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로 안전띠 개념으로 한 줄로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하여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20cm 이내로 한다.

③ 표시 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하고,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서 광고물로 인지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④ 전광류는 사용을 금지한다.

**제1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직접조명),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화면변환 형식의 광고물 표시는 금지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은 제외한다.

② 조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원에 커버를 씌워 반드시 내부 조명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 되면 안된다.

**제12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복합 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게시시설 포함)를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 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건물의 주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기둥에 설치한 것 포함), 애드벌룬, 벽보, 전단은 표시를 금지한다.

**제15조(광고물심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례, 정비시범구역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과 맞지 않거나,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 시 제출서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 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정비시범구역 내 신규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시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는 광고물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주 등이 반드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세입자가 정비 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울산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본 고시에 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1. 본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이 고품격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법, 영, 시 조례, 구 조례를 준용한다.

**【붙임 1】**

**□ 지정구간 도로명 주소**

**정비시범구역 (지번조서)**

주소	도로명 주소
울산 북구 호계동 831-1	호계6길 33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8-4	호계6길 34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8-5	호계6길 35-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8-3	호계6길 36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7-5	호계로 205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7-7	호계로 207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70-3	호계2길 7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7-6	호계로 209-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7-11	호계로 209-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7-12	호계로 209-4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69-4	호계로 210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69-6	호계로 210-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3-1	호계로 21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3-6	호계로 213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6-2	호계로 213-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1-13	호계로 214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1-15	호계로 214-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836-1	호계로 215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3-1	호계로 216-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6-11	호계로 217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6-10	호계로 217-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5-6	호계로 218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5-5	호계로 218-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5-1	호계로 219-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7-6	호계로 220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4-1	호계로 22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7-7	호계로 22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3-4	호계로 223-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3-3	호계로 223-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688-1	호계로 224-2 (호계동)

## 정비시범구역 (지번조서)

주소	도로명 주소
울산 북구 호계동 936-51	호계로 225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2-10	호계로 226-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2-5	호계로 226-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49	호계로 227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2-9	호계로 228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32-3	호계로 228-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48	호계로 229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17	호계로 230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3	호계로 23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7	호계로 231-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75	호계로 23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2	호계로 232-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8	호계로 233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1	호계로 234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41	호계로 235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3-37	호계로 235-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936-30	호계로 236-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25-2	호계로 237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25-29	호계로 238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8-5	호계로 240-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24-7	호계로 240-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7-1	호계로 24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9-2	호계로 243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9-1	호계로 244-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9-5	호계로 244-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50-1	호계로 245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51-1	호계로 245-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49-1	호계로 246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52-1	호계로 248-1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52-7	호계로 248-2 (호계동)
울산 북구 호계동 754-7	호계로 250 (호계동)

【붙임 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물(쇠부리체육센터) 위·수탁 협약 사항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물(쇠부리체육센터) 위·수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위탁시설 :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체육센터

위치	시설규모	시설면적(m <sup>2</sup> )			비고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북구 천곡남로 86	지하2층, 지상3층	5,314	9,527	1,886	

2. 수탁법인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3.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4. 위탁업무 범위

-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 부대시설 운영
- 생활체육의 보급 육성 및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운영 등